

7년간 침해 당한 공업소유권 (1)



禹元命
(發明人)

1. 머리말

법률이 어떤 자에게 권리를 부여할 때, 법률은 그 자에 대하여 구제권도 부여한다 (When the law gives anything, it gives a remedy for the same)라는 법률 격언이 있다.

무체재산권이 일종인 공업 소유권도 당연히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침해를 당했을 때는 구제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 권리는 다른 권리와는 달리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제때에 보호받지 못하면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게 된다. 왜냐하면 침해 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중에도 악의의 침해자는 계속하여 권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럼에도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기간은 계속하여 침해된 상태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구제권이 발동되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인은 여기에서 개인의 재산권인 공업소유권을 어떻게 침해당했는가 하는 경험을 기술함으로써 공업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오랜 연구결과로 이루어지는 권리가 악의의 침해자로부터 법의 보호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려 한다.

2. 현수식 밀폐장치를 이용한 압력솥의 개발

본인은 1963년 2월 11일 “화기통을 착설한 솔”을 출원하여 1964년 3월 23일에 실용신안 등록 제2262호로 등록함으로써 일찍부터 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쌀의 양적 손실과 쌀눈 안에 함축된 영양소의 손실이 없는 현미식으로 식생활을 개선하겠다는 김충호씨를 만나게 되어 도정도 낮은 쌀과 보리·콩 등 잡곡밥을 단시간내 쫄기있게 짓고 맛과 영양소를 잃지 않는 밥솥 연구 개발에 뜻을 같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도에 알맞은 솔을 개량하던 중 김충호씨의 오랜 경험을 통해 밀폐 취사의 합리성을 알게 되어 솔 내부의 높은 온도와 이 온도 상승 비율대로 따라오르는 솔 내부 압력과의 복합작용으로 솔 내부 조리물의 완숙속도를 빠르게 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압력솥(당시는 고압솥)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고압솥은 밀폐불량이 많았고 압력으로 인한 위험성을 방지하기가 어려워 우리 생활 실정에 맞는 안전하면서 밀폐효율이 좋고 열효율을 높여 연료를 절약시키는 압력솥을 개발하려 하였다.

이때 본인과 김충호씨(이하 본인들이라 한다)의 연구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적 어려움과 함께 당초의 계획 5배의 거액이 지출되는 바람에 운영자금 난으로 고전을 겪기도 하였

다.

그러나 본인들은 이를 감수하고 계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1978년 9월 7일에 지금까지 선진국에서조차 연구 흔적은 있으나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던 현수식 밀폐장치를 출원하여 80년 4월 24일 실용신안 등록 제17751호 “고압 솔 뚜껑의 밀착장치”로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뚜껑의 좌우회전 없이는 뚜껑개폐가 될 수 없는 구조의 접동회전식(Slide식) 압력솥에 기밀효과가 불완전한 수평식 밀폐방법을 현수식 밀폐방법으로 보완한 것이다.

자세히 설명하면, 뚜껑의 천정 가장자리 감합홈에 패킹이 끼워져 매달리게 한 뚜껑을 솔체에 결합시키면 그 패킹이 솔체 상단 내향경사면에 접촉되는데, 뚜껑을 우회전시켜 솔체에 뚜껑이 결속되면 패킹은 솔체 상단 내향경사면 대로 변형(曲折)되면서 경사면 깊이 밀착되어 솔안이 기밀되게 한 것이었다.

또한 솔을 가열하면 솔안의 압력으로 회전여유 간격만큼 뚜껑이 들리는데, 이때에도 뚜껑따라 패킹이 경사면 하협에서 상광으로 움직이므로 패킹 끝 부분의 밀착상태에 불변하게 되어 회전여유간격으로 인한 밀폐불량도 있을 수 없는 밀폐방법이었다.

이러한 성능이 인정되어 1981년 4월 30일 제1회 전국 신기술제품 전시대회에 출품

하여 금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수상 당시 전시장에는 화기 취급이 금지되어 있어 기밀효과를 증명할 수가 없었는데 전시대 밑에 컴프레셔를 장치하여 인공적인 압력을 가하여 기밀효과를 증명하였다. 그리고 금상수상으로 여러 신문에서 제품소개를 하였고 장기간의 패킹 사용수명, 저렴한 가격, 완전무결한 밀폐효과, 뚜껑 개폐의 편이성 등이 널리 신뢰를 받게 되었다.

이어 압력솥 뚜껑 안전개폐장치(80. 10. 20. 실용신안 등록 제18556호), 압력솥의 뚜껑 개폐 정착장치(82. 7. 29. 실용신안 등록 제22154호), 접열통을 부착한 압력솥 뚜껑 안전 개폐장치(86. 1. 11. 실용신안 등록 제30011호), 압력솥(84. 3. 21. 의장 등록 제47061호) 등 우리 생활 실정에 맞는 실용성 있는 장치들이 등록됨으로써 더욱 신뢰를 받게 되었고, 1983년 8월 31일에는 KBS스튜디오 830에서 27분간 압력솥 연구 경위와 안전도 및 밀폐도와 아울러 높은 열효율로 인한 경제성 등 새로운 기능을 생방송으로 소개하게 되었다.

또 1984년 2월 24일에 위 실용신안 4건과 의장 1건 등 5건의 공업소유권을 바탕으로한 압력솥을 대우전자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도 계속중에 있다.

위와 같이 엄청난 연구비와 오랜 연구기간의 소산으로

얻어낸 권리가 침해되어 권리자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물질적 이익을 막고, 아울러 발명인으로서의 의욕까지 상실시키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다.

3. 침해자의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에서 대법원 침해 확정 판결까지

금상을 받은 지 2년후 본인들의 실용신안권을 복사침해한 무학압력솥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1983년 3월 12일에 등록고안을 침해한 대신경금속공업사 대표 추종보씨에게 변리사를 통한 경고를 하게 되었다. 이때 그들이 생산한 제품은 본인들의 등록고안 권리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었다.

이러한 본인들의 경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본인들에게 그 부당성을 상세히 답변하여 제소를 막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추종보씨와 그 법정 대리인인 조창희씨는 경고한 지 8일만인 1983년 3월 20일에 복사침해한 제품과 부분적으로 다르게 사위도시한 도면을 조작하여 그 도면(이하 (가)호 도면이라 한다)과 설명서에 기재된 “압력솥의 기밀장치”는 등록 제17751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의 취지로 특허청 심판소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당시 본인들은 이것이 대법원 침해확정까지 만 6

발명인 발언대

년 3개월이 걸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이처럼 클줄은 예상하지 못했었다. 침해를 알게 된 때는 이미 권리보호기간 3년을 경과한 때였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대법원 침해 확정판결까지 만 6년 3개월이 걸렸으므로 현행법 실용신안

권의 10년간이란 권리보호기간이 실효적전에 있어서 본인들의 권리는 보호를 받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그 과정을 표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인들의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나 침해자의 권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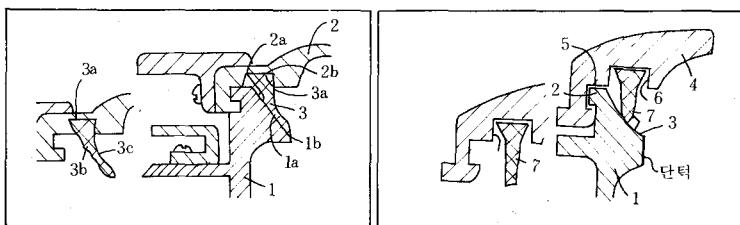
확인 심판청구의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그림 참조)

실용신안 등록 제17751호의 등록청구범위는 “고압솔(1)의 상단내부측부에 내향경사면(1a)을 가지고 그 하단부에 단턱(1b)을 형성한 곳에 와닿을 뚜껑(2)의 저면접면부(2a)에 삭설된 요입부(2b)에다가 감합부(3a)를 상광하협의 삼각형상으로 하고 내향경사벽면(3c)을 가진 외주면에 요입부(3b)를 형성하여 되는 고무패킹(3)을 감합하여 되는 고압솔 뚜껑의 밀착장치”이다. (이는 뚜껑천정에 패킹이 매달리게 구성되고 솔체 상단이 내향경사면으로 구성된 현수식 밀폐방법의 장치를 뜻한다).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서에 나타난 침해자의 (가)호 도면의 설명을 보면 “압력솔(1)의 솔전(2) 내측면에 곡면으로 된 단턱(3)을 형성하고 그 위에 연접되는 뚜껑(4)의 접촉부(5)에 내측으로 패킹삽입홈(6)을 (ㄱ)형 단면으로 형성하여 그 내부에 실리콘 수지재로 된 (丫)형 단면의 패킹(7)을 감합하여 패킹하단이 곡면으로 된 단턱(3)에 접촉하도록 된 압력솔의 기밀장치”라 하고 있다.

침해자가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를 하게 된 의도는 침해제품의 뚜껑천정에 삭설된 패킹삽입홈 구조는 등록고안과 같이 상광하협으로 된

구 분	년 월 일	내 용
출 원	1978. 9. 7	출원 번호 78-4694호
공 고	1979. 12. 10	공고 번호 79-2043호
명 칭		고압솔 뚜껑의 밀착장치
등 록	1980. 4. 24	실용신안 등록 제17751호
침해경고	1983. 3. 12	변리사를 통해 경고
심판청구	1983. 3. 20	침해자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를 심판청구취지로 하여 특허청 심판소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83년 심판 제209호)
심결주문	1983. 12. 21	특허청 심판소(83 제209호) 심결 (가)호도면 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압력솔의 기밀장치는 등록 제17751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심결주문	1985. 2. 27	특허청 항고 심판부(84당 제15호) 심결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판결주문	1987. 2. 10	대법원 제4부(85후 45호) 선고 원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부로 환송한다. (환송 6호)
심 결	1987. 7. 27	특허청 항고 심판부(84당 제15호) 심결 환송 6호 및 83 제209호 심결 원심결을 파기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 문		
상 고	1987. 8. 28	침해자 불복상고(87 후 104호 권리범위확인)
판결주문	1989. 6. 13	대법원 제3부(87 후 104호)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주 문		



실용신안 등록 제17751호의 단면도

침해자가 심판소에 제출한 (가)호의 단면도

발명인 발언대

(ㄱ) 삼각형이었으나 이것과 상관없이 도면상으로만 이해되는 심판에서 변조된 부분적 상이를 강조함으로써 등록고안의 권리범위 밖에 있다는 심판을 이끌어 내려 한 것이다.

그래서 패킹삽입홈 구조를 (ㄱ) 직사각형으로 사위하고 패킹 또한 등록된 사선형과 수직형은 동일구성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다른 구성인 것처럼 주장하고 작용효과까지 판이하다고 강조함으로써 계략의 저의를 들어내었다. 이와 같은 주장과 함께 등록 고안의 솔체 상단 내향경사면이 직선인데 대하여 (가)호는 곡선으로 된 단턱(1)이라고 혼동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심판부로 하여금 심리미진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뚜껑 개폐를 위해서는 뚜껑의 좌우회전은 불가피한 구조이고, 또 패킹은 뚜껑 천정의 감합홈에 매달리므로 침해자의 도면상의 구조는 패킹 이탈이 필연적이고 패킹이 감합홈에 떠 있어서 솔안이 밀폐될 수가 없으므로 기밀은 불가하여 감합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침해자와 법정대리인은 심판청구에서 청구의 취지로 “압력솔의 기밀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패킹이 이탈되는 솔안이 밀폐될 수 없으면 압력솔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 또한 재판부를 심리미진으로 몰고 가려고 한 계략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초심 판결문에서 조차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밀폐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작용효과를 (가)호에서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가)호 기밀장치는 등록고안이 출원되기 이전부터 공지의 사실이므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의 특허청발행 공개 실용신안공보 실개소 49-105471호와 소 52-154359호를 끌어 들였으나 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초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두개의 일본 실용신안중의 하나인 소 52-154359호는 침해자와 법정대리인이 1987년 8월 28일 다시 불복상고의 증빙으로 사용하였다.

또 거슬러 1985년 2월 27일 특허청 항고 심판 역시 그 판결문에서 “(가)호는 등록고안에 비해 기밀효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인정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등록고안에 비해 (가)호의 패킹삽입홈 구조가 현저하게 달라서 기밀효과가 판이함을 인정하여 항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본인들은 상고하여 1987년 2월 10일에 대법원은 “어느 고안이 다른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 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의 점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라는 판례를 인용하면서 본인들 고안이나 (가)호는 모두 “압력솔 뚜껑에 패킹을 감합시켜 늘어뜨려 압력솔 상단 내측부의 경사면에 닿게 함으로써 내부에서 고온으로 생긴 수증기의 압력이 패킹을 압력솔 벽면으로 밀어부쳐 압력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위 양자간에 그 작용면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으며 다만 위와 같은 상단내측부나 패킹의 구조 또는 그 삽입홈의 구조상의 차이는 위 양자간에 그 작용면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으며 다만 위와 같은 상단내측부나 패킹의 구조 또는 그 삽입홈의 구조상의 차이는 위 양자의 목적, 작용, 효과가 동일한 범주내의 변형에 불과함”을 인정하여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부로 환송하였다.

이에 대해 특허청 항고 심판부는 1987년 7월 27일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1987년 8월 28일에 침해자는 위의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를 하였으나 1989년 6월 13일 대법원 제3부에 의하여 기각 판결을 받았다.

〈계속〉